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717호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측량업자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, 과태료 부과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(법률 제19047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)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8875호, 2022. 6. 10.) 제정(2023. 6. 11. 시행)에 따라 현행 규정의 “특별자치도”를 “제주특별자치도”로 명확히 함(안 제35조)
- 나. 측량업의 등록취소,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(안 제44조, 별표 8의2)
- 다.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,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방법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(안 제99조, 별표 11의2)
- 라. 측량업 및 성능검사대행업자 위반행위에 따른 등록취소,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(안 별표 8의2, 별표 11의2)과 과태료 부과와 가중처분 기준 및 위반행위별 부과권자 등을 명확히 함(별표 13)
- 마. 그 밖에 영문자 측량기기 이름을 한글과 병기하여 알기 쉽도록 정비함(안 제97조, 별표4, 별표8, 별표12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- 전자우편 : song6186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540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(전화 (044) 201 - 3485, 팩스 044-201-554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